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52
------------	-------

발의연월일 : 2018. 9. 6.

발의자 : 이완영 · 주광덕 · 김명연
송언석 · 김태흠 · 곽대훈
강석진 · 어기구 · 김광림
이은권 · 박맹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고자 함(안 14조의 2 신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곤충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 · 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4조의2(곤충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